

웅지세무대학교	7
---------	---

장 학 위 원 회 규 정

문서반	호	
제정일	실자	04.03.01
최근개정	성일자	22.08.30.
페이	지	
주 관	처	교학처
관리투	ᅺ서	학생지원실
홈페이지	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단, 입학주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04.01, 개정 2022.08.30.>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 1. 장학제도에 대한 기본 계획의 심의 및 예산 확보 사항
- 2.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5.06.01.>
- 4. 장학금 및 장학인원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집 및 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학처 학생팀 담당자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 1. 제2조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개정하다
- 2. 제6조 "학생처"를 "교학처 학생팀"으로 개정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3조(기능) 3.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2조 입학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추가하다.